



소득세법

[시행 2022. 2. 18.] [법률 제18425호, 2021. 8. 17., 타법개정]

기획재정부 (소득세제과(사업소득, 기타소득)) 044-215-4217

기획재정부 (금융세제과(이자소득, 배당소득)) 044-215-4236

기획재정부 (소득세제과(근로소득)) 044-215-4216

기획재정부 (재산세제과(양도소득세)) 044-215-4314

제1조의2(정의)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0. 12. 27., 2014. 12. 23., 2018. 12. 31.>

1. "거주자"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(居所)를 둔 개인을 말한다.
2. "비거주자"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.
3. "내국법인"이란 「법인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.
4. "외국법인"이란 「법인세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.
5. "사업자"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주소·거소와 거주자·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09. 12. 31.]